신용정보업감독규정

<목 차>

1.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이름	김영민
	담당부서 (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직급	전산전문관
	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자	연락처	02-2100-2621
	과장 금	금융데이터정책과 장		이메일	2080670@mail.go. kr

2021. 11. 11. 작성

금융혁신기획단장 안창국 (서명)

< 규제 개요 >

	1.규제사무명	본인신용정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신설			
기본	2.규제조문	제23조의3제1항항제9호~제10호				
정보	3.위임법령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의6제1항제11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021.11.12 ~ 021.11.22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20.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본인신용 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도입되었으며, '22.1월 개인신용 정보 전송요구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 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권 시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이 제 기되어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임.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정보 중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및 정보오남용 우려가 높아 명확한 규제 신 설을 통해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규제의 필요성	7.규제내용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1.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를 마케팅, 제3자 제공 등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예금성상품, 직불·선불 카드 및 전자지급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8 .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행위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해관계자1: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의무가 있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해관계자2: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48개사('21.10월말 기준) 이해관계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약 1,600여개사 이상 이해관계자 마이데이터 사업자 고객 약 250만명(인구의 5% 이용 가정)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9.규제목표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히고, 개인정보침해, 정보오남용 등 사고발생 우려를 제한				
규제의	10.영향평가	기술영형	향평가	경쟁영향평	카	중기영향평가

	여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적정성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적요정보를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거나 미성년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일부 마이데이터사업자의 경우 동 행위규칙 준수를 위해 필요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다만, 마이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제고 등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산업 규모 확대가 기대되고, 개인정보침해 및 정보오남용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복구 및 손해배상 비용, 신뢰 하락에따른 고객감소 방지 등 편익이 비용대비 클 것으로 판단됨			
	12.일 몰 설 정 여부				
기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해당없음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제23조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영 제18조의6제1항	행위규칙 등) ①				
제1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말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게 조회・분석 업무를 제공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u><신 설></u>	가.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정보				
	나. 만 19세 미만 개인신용정보주				
	체의 개인신용정보				
	<u>10. 만 19세 미만의 개인신용정보주</u>				
	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				
	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u>목의 행위</u>				
	가. 만 19세 미만인 개인신용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 본인신용				
	정보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했				
	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u>행위</u>				
	나. 만 19세 미만인 개인신용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				
	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제공하				

현 행	개 정 안
	<u>는 행위</u>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제3조제1호에 따른 예금
	<u>성 상품</u>
	2)「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직불카
	드 및 선불카드
	3)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
	3호 및 제14호에 따른 직불전
	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
	<u>수단</u>
② ~ ④ (생 략)	<u>4</u>)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
	정에 따른 금융상품과 유사한
	<u>상품으로서</u>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융상품
	② ~ ④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 '20.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도입되었으며, '22.1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음
- □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과정에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제기되어 이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임
- □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및 정보 오남용 우려가 높아 명확한 규제 신설을 통해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행위규칙을 신설하여 다음의 행위를 금지
 -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를 마케팅, 제3자 제공 등 신용정보 주체 본인 조회·분석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예금성상품**, **직불·선불 카드 및 전자지급 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MyData Working Group 등 논의 과정에서 적요정보 와 미성년자 정보에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규제안 반영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기	표세한 현 경

3. 규제목표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히고, 개인정보침해, 정보오남용 등 사고발생 우려를 제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동 규제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립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 최종적인 규제의 혜택이 귀속된다고 판단
- □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및 정보 오남용 우려가 높아 명확한 규제 신설을 통해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 규제의 수준에 있어서도 일괄적인 금지 보다는 개인정보침해 정보 오남용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내로 제한**하는 등 **필요최소한** 으로 **한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기준 등 특정기술과의 연관성 없음

- 경쟁영향평가

동 규제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로써 경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①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제공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함 ② 사업의 요건으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의 절차를 설정함			

- ③ 일부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 제공 능력을 제한함 (예: 특정지역 · 특정유형 사업자 우대, 신규진입자 차별 등)
- ④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퇴출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예: 과도한 자본금·설비·자격요건·제품검사·인증 등)
- ⑤ 사업자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노동의 이동을 제한함 (예: 사업지역 제한 등)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 ①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설정 능력을 제한함 (예: 가격상·하한 설정, 요금인가, 외부기관의 개입 등)
- ②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촉, 광고, 마케팅 활동을 제한함
- ③ 일부 사업자에게 더 유리하게 상품의 품질기준을 설정하거나, 일반소비자가 선택할만한 수준 이상의 품질기준을 설정함
- ④ 다른 사업자에 비해 일부 사업자의 생산비용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킴 (예: 특정사업자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 ① 산업계 혹은 전문직 협회에 의한 자율규제 체계를 형성함(협회 가입 의무, 협회에 규제 권한 부여 등)
- ② 사업자에게 가격, 생산량, 또는 매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 ③ 특정 산업의 활동 또는 사업자의 활동을 경쟁 관련법 적용에서 배제함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①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한함(예: 온라인 등 판매채널 제한 등)
- ② 소비자의 공급자 전환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이동성을 감소시킴 (예: 과도하게 긴 계약조건, 계좌 해지·통신사 이동시 수수료 부과 등)
- ③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활용하는 정보의 내용·제공방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함(예: 일부 상품 정보만 제공 등)

- 중기영향평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일부 중소기업이 존재하나, 동 규제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써 중소기업 등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고,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됨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 규제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행위규제로 진입을 제한하는 사실이 없음

- 일몰설정 여부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로서 일몰 설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유연한 분류 체계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네거티브 리스트	O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나열
사후 평가관리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규제 샌드박스		미성년자 및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미적용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EU GDPR) 청소년 및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앱이나 사이트가 청소년 및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친권자의 동의를 얻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규정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 (미성년자 보호) 민법 제5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 (민감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동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의료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제5항제1호,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의24 등에서 정보보호 필요성이 높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 추가 동의 요구, 활용·제공범위 제한, 보안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규정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 피규제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감독원** 검사 및 감독 대상 기관으로 주기적인 검사, 감독을 받게됨을 고려할 때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 검사 조직 등이 기마련된 점 등을 고려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 재정 소요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다수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MyData Working Group 논의를 통해 규제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도입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영업 과정에서 규제의 불합리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조치할 게획
3. 종합결론 □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성장 을 위해 현행 규제안을 도입코자 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1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직접				
· 소상공인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세분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
활동제목	행위규칙 준수
비용항목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 수정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가 신설된 행위규칙 준수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정하여야 함에 따라 프로그램수정에 따른 비용 발생 가능.
근거설명	다만, 적요정보 제공이나 미성년자 서비스 제공 여부는 선택 사항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원하는 일부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자에게만 발생하고,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 초기단계 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규 개발 또는 수정시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사실상 추가비용 발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 정.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세분류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활동제목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편익항목	안전하고 신뢰받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반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신뢰받는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가능